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61
----------	------

2017년 09월 0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창수 의원 외 10명
- 나. 제안일 : 2017년 8월 11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 법령상 근거 미비.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9조)
-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 규정(안 제15조)
-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 규정(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입법예고 결과(2018.8.21.~ 8.28)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제정안은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렴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 본 제정안은 30개 조(條)로, 총칙(제1조~8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제9조~제12조),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제13조~제17조), 청렴문화조성(제18조~제23조),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제24조~제2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내·외부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가. 총칙

-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 정책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의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조항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투명시정 실현
제2조(정의)	공직자, 투자출자출연기관 의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
제4조(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	청렴문화조성 기본 방향, 목표, 전략 등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교육, 호보, 체험, 실천, 사례연구 조사 등
제7조(협력체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서울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수행사인(「부패방지권의 위법」)까지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의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관련 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감사역량 제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렴 문화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부패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공무원법」제53조의 청렴의 의무와 같이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법」제53조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안 제8조는 청렴정책의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원발의 조례로 집행부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 침해 소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항	주요 내용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의 자문을 위해 설치함.
제10조(위원회 구성)	15명 이내, 위원장 호선선출, 임기2년
제11조(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의록 작성등
제12조(위원회 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안 제9조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청렴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에 자문 및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청렴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
구성 : 학계 · 연구계 ·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13인
출범 : 2016년 8월 24일(임기1년)
역할 :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 및 정책제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¹⁾에 따른 위원회 구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다.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 안 제3장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처벌·규제 등으로 청렴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과는 달리, 청렴자율준수제를 운영하여 사전예방 및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조항	주요 내용
제13조(청렴 자율준수제)	청렴자율준수제를 정의함.
제14조(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각 기관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지정운영함.
제15조(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청렴리더십, 담당자지정, 예산확보, 교육등
제16조(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제17조(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제공 및 감사유예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4조는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안 제15조의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청렴담당자 지정 및 예산확보,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기관장이 청렴 자율준수 담당관으로 지정될 경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도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을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으로 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렴 자율준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8조의 청렴정책 전담조직과 연계방안 마련 등 제도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청렴문화조성

-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 및 하부 조직의 청렴담당자를 지정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조항	주요 내용
제1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연1회이상, 청렴도, 부패요인 분석
제19조(청렴도 평가)	연1회, 내부평가 외부기관 의뢰
제20조(청렴도 조사)	연1회, 외부평가(시민), 전문기관 의뢰
제21조(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	각 부서별 청렴·감사업무 담당자 지정
제22조(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	공개모집, 인·허가, 공사·용역 모니터링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연1회 정기적 교육,

- 안 제18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와 부패취약 요인분석 등을 위해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성원 또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책임자, 실무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의 제시와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방법 또는 당연직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2조는 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허가, 공사·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서울시정에 대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청렴문화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청렴모니터단의 신청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하고 있고, 성인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신청이 가능한 바, 제도 시행에 있어 실효성있는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정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인·허가와 공사용역 부분은 안전감사옴부즈만이, 민원처리과정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마.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

-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제정안으로 병합하려는 것으로, 청렴문화조성에 관련 정책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규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27조는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상 후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있어, 청림문화조성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
 - 다.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

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 및 교육
5. 청렴문화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감사위원회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1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제13조(청렴 자율준수제)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말한다.

제14조(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강화
2. 청렴 담당자 지정 및 예산 확보
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4.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5. 부패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제16조(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①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1. 상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조사·진단·평가·점검 등 필요한 사항
2. 하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 실시

② 제1항제2호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센티브 부여) 시장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 실적평가 결

과를 활용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청렴문화조성

제1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21조(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 ① 시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국·본부(사업소 포함), 투자·출자·출연기관 각 부서마다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를 ‘청렴 서포터즈’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2.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추진
3.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보고
4.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등

③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제고에 우수한 성과를 낸 청렴 우수 ‘청렴 서포터즈’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수립을 위해서 「시민 청렴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신청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 등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은 인·허가, 공사·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장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

제24조(하정 청백리상) 시장은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이하 "하정 청백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수상종류 및 인원) 하정 청백리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선정절차) ① 감사위원장은 실·국·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자체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 퇴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감사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각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정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하정 청백리상을 시상 한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한다.

제2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